

지난해 **272만 가구**가
1조 7천 6백억원을 받았습니다

일하는 즐거움 삶이든 행복

근로장려금 · 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~

신청대상
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

※ 신청요건은 뒷면을 확인하세요.

신청기간

2018. 5. 1. ~ 5. 31.

※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말 지급 예정입니다.

신청방법

ARS(1544-9944), 홈택스(인터넷, 모바일), 서면신청

※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환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


☎ 국번없이 126번 [②번 누른 뒤 ④번]

검색창

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▼



국세청
National Tax Service

신청자격
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■ 근로장려금

가구요건 (① or ②)	① '17.12.31.현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을 것 ② 신청자가 30세 이상일 것('87.12.31.이전 출생)		
부부합산 총 소득요건	가구원 구성	연간 총소득기준금액	지 급 액
	단독 가구	1,300만원 미만	3~85만원
	홀벌이 가구	2,100만원 미만	3~200만원
	맞벌이 가구	2,500만원 미만	3~250만원
재산요건	'17.6.1.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		

■ 자녀장려금

가구요건	'17.12.31.현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		
부부합산 총 소득요건	가구원 구성	연간 총소득기준금액	지급액(자녀 1인당)
	홀벌이 가구	4,000만원 미만	30~50만원
	맞벌이 가구		
재산요건	'17.6.1.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		

- '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았을 것(자녀장려금에 한함)

■ 공통사항

- 18세 미만 부양자녀 : 1999.1.2. 이후 출생(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
- 70세 이상 부양부모 : 1947.12.31. 이전 출생 부 또는 모
- 부양자녀와 부양부모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것
- *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「모의계산」 (화면우측 상단)에서 가능

유의사항

- ①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- ②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③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- ④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50% 지급됩니다.
- ⑤ 기한후 신청(6월1일~11월30일)의 경우 10% 차감하여 지급됩니다.
- ⑥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%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.